

수입축산물의 안정성과 검역제도 문제점

권 사 홍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

1. 머릿말

정부의 전면적인 농축산물 수입개방정책이 본격화됨에 따라 농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하고 있다. 또한 수입자유화율도 88년의 75.1%에서 89년의 79.3%, 90년에는 82.8%로 급속하게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정부는 수입개방으로 인해 몰락하게 될 농민을 농업에서 추방하고 소수의 부농중심으로 농업구조를 조정하여 농축산물의 수입을 구조적으로 정착시키려는 「농어촌발전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농민들은 물론 전체국민들까지도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고 국내 농업·농민을 보호·육성하여 농업생산력 기반을 넓히고 자립경제건설을 위한 농정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특히 수입 농축산물이나 식품에서 인체에 치명적 해를 끼치는 유해물질이 발견되고, 그 것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철저한 안전기준과 검역제도의 마련을 위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농축산물의 안전성문제는 식생활을 통해 국민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고, 특히 수입 농축산물의 안전성은 수입으로 인한 국내 농업기반의 파괴가 유해농축산물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정착시킨다는 점에서 단순히 소비자의 '안전한 식품'을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에 그치는 문제가 아니다. 농축산물의 안전성의 보장은 오직 농축산물의 수입을 전면 중지하고 농업·농민을 보호·육성하여 농업자급력을 높여 농축산물의 수입의존으로부터 탈피함으로써만 가능할 것이다. 다시 말해 농업·농민문제의 궁극적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관점에 입각해서 수입 축산물의 유해성을 확인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축산물 검역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수입 축산물은 안전한가?

수입 축산물의 안전성이 본격적으로 제기되기 시작한 것은 1989년초에 유럽공동체(EC)에서

미국산 쇠고기에 인체에 유해한 성장촉진제와 항생제가 함유됐다는 이유로 이의 수입을 전면 금지한 것이 밝혀진 후부터이다. 우리나라에서도 한국부인회 등 소비자단체가 수입 쇠고기의 불매운동과 함께 항생제 및 성장호르몬의 잔류여부를 검사해 줄 것을 보건사회부에 요구하게 되었으며, 안전기준이나 검사제도가 거의 구비되어 있지 못한 현실이 밝혀져 사회적으로 커다란 비난의 여론이 일어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식육 등 축산물에 유해물질이 잔류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가축이 각종 질병에 걸려있던 경우 ②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를 위해 사용한 동약(動藥)중의 유해물질(항생제, 항균제 등)이 잔류하는 경우 ③ 유해물질이 함유된 사료 등을 통해 가축의 체내에 잔류하는 경우 ④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에서 사육되어 방사능에 오염될 수 있는 경우 ⑤ 수출국에서 수입국으로의 수송 과정에서 부패·변질될 경우 ⑥ 유통과정에서의 변질을 막기 위해 항생제 등의 약품처리를 하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리고 이제까지 국제적으로 식육의 안전성이 문제로 됐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로 방사능에 오염된 스웨덴산 순록육, 핀란드산 소의 위장, 유기염소계 농약(DDT)에 오염된 호주산 쇠고기, 태국산 돼지고기, 합성항균제에 오염된 미국산 돼지고기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문제가 발생하자 폐기 또는 반송조치가 취해졌다.

국내에서는 1989년초 부패변질된 호주와 캐나다산 쇠고기가 발견되고 공업용으로 수입된 우지가 식용으로 전용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작년 8월 한국부인회가 실시한 식육제품의 아질산염 잔류량과 유통실태조사의 결과는 수입 식육제품의 유해성이 국산 제품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즉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1종의 국산 제품과 7종의 수입 제품을 수거·조사한 결과 국산 제품에서는 아질산염이 평균 2.28ppm 검출된 반면, 수입 제품에서는 국산 제품보다 1.6배 많은 3.65ppm이 검출되었다. 뿐만 아니라 유통실태에 있어서도 수입제품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통관리가 허술하여 부패·변질된 제품이 많이 발견되었고, 보관상의 주의사항이나 식품위생법상 표시기준의 준수사항도 국산 제품의 경우는 대체로 잘 지키는 편이지만, 수입제품은 수거된 7종 모두 이를 지키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던 것이다.

<표1> 제품별 아질산염 검출결과

업체명	제품명	아질산염 (ppm)	업체명	제품명	아질산염 (ppm)
대림 식품	비엔나소시지	1.1	진주햄	홈소시지	0.2
	참피온소시지	1.7	〃	새참맛소시지	0.5
	네모구이	1.6	펭귄	후랑크소시지	1.0
롯데햄	살로우만	0.9	한국식품	후랑크소시지	2.0
	장조림햄		공업	잠보	1.9
	살로우만	2.7	한국냉장	칵테일소시지	0.8
	뉴스모크햄		성진물산	핫도그소시지	1.3
	로스팜	2.2	美로얄	콘킹	1.7
	둘리소시지	0.3	데인社		
	핑크소시지	0.7	〃	로얄데인	3.2
제일	새야채소시지	1.3	네덜란드	딘	3.7
제당	후랑크소시지	2.6	텐튜립社	튜립	5.5
	88스모크햄	2.8	美호멜社	스팸	3.2
	동그랑땡	14.3	美아모르社	트리트	5.0
	스팸	2.7	美	비엔나소시지	3.3
	스모크캔터키	5.4			

3. 축산물 수입검역제도의 실태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모든 축산물은 검역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처리법 등에 의한 수입검사를 받아야 한다.

우선 모든 수입 축산물은 1차적으로 가축전염

병예방법에 의거하여 동물검역소에서 수입검사를 받아야 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은 가축의 전염성 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음으로써 축산업의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이 법 제24조 ①에 의해 지정검역물(=수입동물 또는 축산물)을 수입하는 자는 자체없이 동물검역소장에게 신고하고, 농림수산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역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특히 제21조와 23조의 ①에 의해 농림수산부장관이 수입금지지역으로 지정한 지역으로부터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우한 지정검역물이나 수출국의 정부기관에 의해 발행된 가축전염병의 병원체(病原體)를 페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은 지정검역물은 수입이 금지된다. 또한 제23조 ②에 의하여 지정검역물이 수입될 수 있는 장소는 다음과 같이 제한된다. 즉 항구로는 부산항, 인천항, 군산항, 제주항, 울산항, 북평항, 공항으로는 김포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제주국제공항이 그것이다.

동물검역소에 신고된 수입축산물의 검역은 검역관에 의해 동물검역소의 축사나 검역창고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제28조), 불합격품이 발견됐을 경우에 검역관은 당해 검역물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서 화주에게 가축방역상 또는 공중위생상 위해가 없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할 것을 명하거나 스스로 이를 폐기할 수 있다(제31조).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해 시행되는 이상과 같은 수입검역은 그러나 이 법의 목적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주로 가축 전염병의 국가간의 이동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입축산물의 안전성 보장을 위하여 각종 유해물질의 잔류허용기준이나 검사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는 1988년

동물검역소에서 실시된 축산물의 검역결과 불합격된 경우가 대부분 검역증명서의 미첨부, 수입금지지역, 부패 등 서류검사나 육안으로 식별가능한 경우밖에 없는 사실에서 잘 나타난다.

수입축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유해잔류물질의 허용기준이나 검사방법, 검사시설 및 관계 법규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 수입검역의 허점이 밝혀지고 이에 대한 국내 소비자 및 축산관계자들의 거센 항의가 잇따르자 농림수산부는 89년 5월 22일 축산물위생처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수육내 항생물질, 항균제, 호르몬제, 농약, 중금속 등 인체유해물질의 시험방법 및 허용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페니실린 등 항생물질 28종, 살파메타진 등 29종, 살충제 트리클로로폰 등 7종 등 총 64종의 잔류물질에 대한 시험방법과 페니실린 등 27종의 잔류물질에 대한 허용기준이 고시되었다.

또한 보건사회부는 작년 12월 6일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3개 식육제품에 대해 항생제 등 동물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정하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 개정령」을 고시하고 90년 12월 1일부터 실시키로 하였다. 잔류허용기준이 적용되는 동물의약품은 네오마이신 등 항생제 17종, 나이카바진 등 합성항균제 18종, 디에칠스틸베스트롤 등 성장호르몬제 5종 등을 포함, 모두 40종이다(表2 참조).

〈표2〉 쇠고기 등 식육제품에 대한 항생제 등 잔류허용기준

잔류물질	식품	허용기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 항 생 물 질				
네 오 마 이 신	0.25	-	-	
노 보 비 오 신	0.1	-	1.0	
모 넨 신	0.05	-	0.05	
바 시 트 라 신	0.5	0.5	0.5	

버지니아마이신	-	0.1	0.1
살리노마이신	불검출	불검출	-
스트렙토마이신	-	불검출	불검출
스피라마이신	0.025	0.025	0.025
암피실린	0.01	0.01	-
에리스로마이신	0.0	0.1	0.125
옥시테트라싸이클린	0.1	0.1	0.1
올레안도마이신	-	0.15	0.15
클로람페니콜	불검출	불검출	불검출
클로르테트라싸이클린	0.1	0.1	0.1
티로신	0.2	0.2	0.2
페니실린	0.05	불검출	불검출
하이크로마이신B	-	불검출	불검출
◇ 합성항균제			
나이카바진	-	-	4.0
니트로빈	0.1	0.1	0.1
데코퀴네이트	1.0	-	1.0
설파디메톡신	0.1	0.1	0.1
설파메라진	0.1	0.1	0.1
설파메타진	0.1	0.1	0.1
설파모노메톡신	0.1	0.1	0.1
설파퀴녹살린	0.1	0.1	0.1
암푸롤리움	0.5	-	0.5
에토파베이트	-	-	0.5
올라퀸독스	0.05	0.05	-
옥소린산	0.05	0.05	-
오르메토프린	-	-	0.1
죠렌	-	-	3.0
치암페니콜	0.5	0.5	0.5
카바독스	-	불검출	-
클로피돌	0.2	0.2	5.0
푸라졸리돈	-	불검출	-
◇ 홀몬제			
디에칠스틸베스트롤	불검출	불검출	-
에스트라디올벤조에이트	0.00012	-	-
제라놀	0.002	-	-
트렌볼론아세테이트	0.0014	-	-
프로게스테론	0.003	-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수입 축산물의 수

입검사는 농림수산부소관의 가축전염병예방법, 축산물위생처리법과 보건사회부의 식품위생법에 의해 이중적으로 실시된다. 그러나 양 부처간의 책임소재가 불명확하고 축산물과 식품 사이의 구별이 애매하여 철저한 수입검사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한미 통상협상의 합의 사항에 따라 수입식품의 제조년월일 표시의무조항을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삭제함으로써 수입식품의 검역에 임하는 정부의 의도를 잘 드러내었다. 결국 수입 축산물의 안전성의 보장은 단순한 제도적·법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축산물 나아가 전체 농축산물의 수입을 강요하고 이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있는 정부의 의도와 관련된, 보다 본질적인 문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3. 맷음말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는 유해한 축산물이 무방비하게 수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불철저한 검역제도 및 검역물량에 비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장비나 인적 자원 등의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모든 농축산물의 수입을 전면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도는 이미 안전한 농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국내 농업의 중흥정책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또한 그러한 정부에 대해 철저한 검역제도와 시설의 확충은 기대하기도 힘들다.

결국 수입 축산물의 안전성문제의 궁극적 해결은 철저한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함께 「농촌발전종합대책」에 깔린 정부의 의도를 분쇄하고 농업·농민을 위한 농민적 농정을 여하히 실현하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것이다. ■